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지침

규정번호	3-2-15
제정일자	2012.02.13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 1 총페이지 3

제정 2012년 2월 13일
개정 2012년 4월 30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우리 대학” 이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기준과 그 절차를 정하여 인사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교원은 산업체 경력과 관계없이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종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한다.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칙 제13조의 자격을 갖추어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원을 말하며,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에 대한 사항은 전임교원임용규칙에 따른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칙에서 정한 일반교원 중에서 소속 학부(과)에서 산학협력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교원이며, 교수업적평가를 “산학협력중점교원” 으로 평가 받는 교원을 말한다.

제5조(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의 학부(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정 및 해지)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한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이 지정을 해지고자 할 경우 매 학년도 1학기 개강일 기준 2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에 의하여 일반교원으로 복귀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학협력실적 저조 등의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책임시수의 감면)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② 특강, 현장실습지도, 취업상담 등 필요한 경우 강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 □해지) 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임용기간 : 20 . . . ~ 20 . . .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 □해지) 기준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전임교원임용규칙 및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지침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산학협력중 점교원 (□지정, □해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부(과)장 추천서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20 . . . ~ 20 . . .

학부(과)장 추천 의견

상기와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 신청자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장 : (인)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